

제 55 차

임 시 이 사 회

◆ 일 시 : 2018년 11월 12일 (화) 16:3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회 순

- I. 개회선언 2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3
- II.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 1. 정관 개정안(의안번호 제165호) 4
 - 2.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66호) 16
 - 3.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67호) 51
 - 4. 복무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68호) 52
 - 5.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69호) 54
- III. 보고안건 보고 60
 - 1. 비상임이사 사임 보고(박춘무 등)
 -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보고
 - 3. 내규 개정 결과 보고
 - 업무분장내규, 인사규정 시행내규, 비상용직 관리내규
- IV. 폐회 64

(개회 : 16시 31분)

· 회의순서 안내

○ 간사 권중석(지원본부장)

이사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회 간사를 맡은 지원본부장 권중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55차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는 임원 총 열세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협 문화본부장님 갑자기 해외출장 일정 변경으로 김선수 감사님이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하시게 돼 있는데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오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의 개회선언 전에 오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조직 개편 관련해서 특별히 배석해 주신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경영자문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개선단 김태형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및 박수]

임재용 총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및 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장님께서 개회선언 후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 개회선언

○ 이사장 강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차 서울디자인재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 이사장 강병길

시작 전에 관례대로 지난 8월 14일 개최했던 54차 임시이사의회의 결과를 먼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권중석

지난 제54차 이사회 상정안건은 3건으로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 「DDP 대관 규정 일부 개정」, 「임원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이상 3건이었습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은, 대표이사 취임 후 연초 디자인재단 혁신TF 운영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4본부·1실·1역·2센터로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과 보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DDP 대관규정 개정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대관료를 일부 인상하였으며, 비상임이사 결원 충원 진행을 위한 임원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후보자로 추천하셨던 1·2순위자 모두 승낙하셔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이길형 회장, CDR 김성천 대표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고맙습니다.

제52차 이사회 상정안건은 총 5건인데 「정관 개정안」,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그리고 「보수규정 개정안」, 「복무규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설치에 따라서 이월된 예산에 대한 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사로부터 들은 후에 논의하고 마지막에 모두 상정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이사들 “예.”]

II.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 의안번호 제165호 : 정관 개정안 】

○ 이사장 강병길

예, 동의해 주셨으므로 간사는 안건을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권중석

먼저 「정관 개정안」, 의안번호 제165호 관련입니다.

자료 (p)6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관 내 명기된 서울시 보직 명칭을 통일하는 건으로, 제14조 제2항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 명칭 '문화본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구성 및 운영 요청 협조에 따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를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로 2018년 삭제된 사무국 조직을 신설하여 현재 4본부·1실·1역·2센터에서 4본부·1실·1역·2센터·1사무국으로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54차 이사회에서 정관 조직도가 개정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 신설과 함께 개정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66호 관련입니다.

(p)11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잠깐만요

지금 안건 하나 하나씩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 이사 한문철

예, 그렇게 하시죠.

○ 이사장 강병길

한꺼번에 다 하시면 논의가 너무 중복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정관개정안 165호 관련해서 2가지 안건이죠. 세부안으로 보면,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하는 대행을 정관 14조 2항에는 현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문화본부장으로 개정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 대표이사 최경란

예.

○ 이사장 강병길

그 첫 번째 안,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안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구성 및 운영 협조에 따른 사무국 직제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고유사업으로 정관에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제상에 전혀 반영이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아서 누락된 부분을 산입하는 <별표1>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맨 밑에 부분 보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이라고 해서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와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외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사 이충기

사무국 신설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나 자구에 14조는 임원의 보직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사무

국 설치에 따른.. 어디에 있나요?

○ 간사 권중석

지금 정관 개정안에는 명칭만 들어가 있고, 다음에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에 역할이 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런데 (p)9 보시면, 이 조직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14조 임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는 하지만, 별표 그림을 보면 원래 있었던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이 또 뒤에도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됐다가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조항은 이상하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간사 권중석

이 조항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지난번 54차 이사회에서 왼쪽 것처럼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개정이 안 된 건입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p)9에 보시면, 왼쪽에 그림이 비엔날레사무국이 없는 게 들어가야죠.

○ 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죠.

○ 이사장 강병길

그게 아니라, <별표1>에 돼 있었 던 것을 지금 이충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구 조직도이고, 이게 반영돼서 새로 만들어진 <별표1> 우측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이 빠져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이사 이충기

그렇죠.

○ 간사 권중석

지난번에 개정이 안 됐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그러니까 현재 것을 넣어야죠.

○ 이사장 강병길

그것은 지난 번 우리 54차 이사회 때 다 논의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여기에 넣고,

○ 이사 이충기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들어간 것으로 같이 넣어야죠. 그림을 안 넣으면 몰라도.

그러면 이 그림을 빼야 돼요.

그런데 임원의 직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거기 조직에 원래 있었던 조직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 얘기에요.

○ 대표이사 최경란

이것만 빼고 이게 가고, 들어간 것만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이해하셨어요?

○ 이사 이충기

잘 못하신 것 같아요.

○ 감사 권중석

아니요.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으신데요.

사실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직제 정원규정에만 이 다이어그램 조직도가 신설되고, 정관 규정이 개정 안 돼서 현재는 어쨌든 이게 현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개정이 미개정 된 겁니다.

○ 이사 이충기

현재 남아있다고요, 사무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 간사 권중석

예. 현재 미개정 된 겁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면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언제 비엔날레사무국 폐지가 됐어요?

○ 간사 권중석

지난번 54차, 바로 전 이사회 때입니다.

○ 이사 이충기

그때는 제가 안 왔나요?

저는 폐지한 이사회 기억이 없어요.

○ 간사 권중석

그때는 여기 건축비엔날레 빼고, 이게 지난번에 개편된 겁니다.

○ 대표이사 최영란

조직개편도에 근거해서 그랬어요. TF 조직개편도에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 이사 이충기

그러면 그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면 어디 조항이 있어야지, 조직도만 갖다 놓고 넣었는지 빠졌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조항이 있었어요, 폐지하는 조항이?

이번처럼 예를 들면 제안이유에 두 번째 비엔날레사무국 폐지에 따른 조직도 변경이라고 있었어야죠, 그때.

그런데 그런 말을 없이 그냥 조직도만 이것으로 넣었다가 지금은 또 설치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그러면 이 정관의 조항에는 아직도 폐지 안 되고 남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간사 권중석

지금 정관에는 남아있었고요, 미스가 나서요. 나머지 직제 및 정원규정에는 오른 쪽에 있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겁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미 남아있었으니까 새로 신설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 이사 방은진

그런데 이게 직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 이사 이충기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는 문화본부장 그 부분이 아니라, 비엔날레사무국이 그러면 아직 폐지 안 되고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 간사 권중석

폐지는 공식적으로 직제에 됐는데, 이 부분이 미스가 나서 개정이 안 된 겁니다.

○ 이사 이충기

지금 또 조항은 남아있고 조직도가 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간사 권중석

직제 및 정원규정에 지난번 전체 조직도를 54차 때 바꾸면서, 조직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 이사 이충기

그럼 그 조직을 만들 때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림만 바꿨잖아요.

○ 간사 권중석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 예를 들면 2단 본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꾼 거죠.

○ 이사 이충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형식적으로 예전에 '16년도인지 '17년도인지 조직을 만들 때 비엔날레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설한다고 했으면 폐지하고 신설을 해야죠.

○ 간사 권중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 이사 이충기

알아요. 아는데,

○ 간사 권중석

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미스가 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54차 이사회에서 정관상 조직도가 개정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 신설과 함께 같이 개정한다.' 하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보고 드릴 때 드렸던 부분입니다.

○ 이사장 강병길

그러니까 '누락'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폐지'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사 이충기

저는 조직도가 바뀌는 문제하고 별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규정을 신설했으면 폐지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설을 해야죠.

○ 간사 권중석

폐지는 지난번 54차 회의 때 된 겁니다.

○ 이사장 강병길

뭐를 폐지를 했어요?

○ 이사 이충기

뭐를 폐지를 해요?

조직도만 바꿨잖아요.

○ 이사장 강병길

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조직도가 바뀐 것을 지난 54차 때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간사 말씀은 '조직도가 옛날 구 조직도가 폐기가 되고, 신 조직도로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이 빠졌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 간사 권중석

예.

○ 이시장 강병길

그러니까 지금 폐지를 이충기 이사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냐 하면, 사무국 자체가 폐기됐다가 다시 신설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시고 있는 것이죠?

○ 이사 이충기

주요골자 <별표1>에 '조직도 내 서울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이라고 적어놨잖아요.

○ 이시장 강병길

그러니까 '신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 이사 이충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설이 아니죠.

○ 이사 한문철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같아요.

이게 정관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별표 조직도 내에 기구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난번 54차 회의 때 이 정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별표 조직도를 바꿨는데 그 별표 조직도가 지금 (p)9 왼쪽에 있는 이것이 아니에요.

○ 간사 권중석

안 바뀐 상태로 바꿨어야 되는데 남아있어서.

○ 이사 방은진

아무튼 (p)8에는 개정안 개정했다는,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돼 있거든요.

○ 이사장 강병길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 간사 권중석

이번에 같이 개정하면서 건축비엔날레사무국이 같이 신설되는 겁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 같아요.

(p)9 보시면 왼쪽 중간에 사무국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사무국이 다시 또 여기 와서 또 하니까 이것은 '조직도 변경이냐, 조직도 신설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간사님 말씀에 의하면 신설도 같은 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 54차 회의 때 그때 새로 만든 조직도가 지금 9쪽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 이사 이충기

다른 거였어요. 빠졌어요.

○ 이사 한문철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것뿐이지.

○ 이사장 강병길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이게 남아 있으니까 폐지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 이사 한문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당시 54차 이사회 때 의결된 조직도에는 사무국이 없는 거예요.

○ 이사 정승연

예. 이렇게 지금 마지막 단이 빠져서 들어가 있었는데요.

○ 이사 한문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p)9에 있는 표시가 잘못됐을 뿐이지, 실제 내용상으로 사무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 간사 권중석

예.

○ 이사 한문철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쪽에 있는 내용을 표기상..

○ 이사 이충기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사무국 신설규정이 있잖아요.

조직도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규정 자체는 비엔날레사무국 규정에 그냥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폐지가 안 됐잖아요.

○ 이사장 강병길

예.

○ 이사 이충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설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 이사 한문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정관에 신설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직도 내에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면 정관은 그냥 있는 거예요?

○ 이사장 강병길

정관은 그대로 있죠.

○ 이사 한문철

정관은 그냥 있고, 정관은 변경이 없고 그대로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죠. 정관 상에는 사무국이 있었는데 조직도에 사무국이 54차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55차 때 지금 다시 사무국을 조직도에 그림을 그려 넣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린 게 맞나요?

○ 이사 이충기

그러면 원래는 정관 폐지 안 한 게 잘 한 거예요?

그럼 정관 그대로 있는 거네요?

○ 이사 한문철

정관은 그대로 있고 조직도만 바꾼다는 것이죠.

○ 이사 이충기

이해하셨어요?

○ 간사 권중석

예.

○ 이사 이충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 이사장 강병길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이라는 용어 안 써도 돼요.

○ 이사 이충기

그럼요. 그것은 신설이 아니죠. 조직도 변경이죠.

○ 이사장 강병길

‘변경’으로만 쓰면 되거든요. 조직의 위치 변경인 거죠.

○ 이사 이충기

맞아요. 지난번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때 우리가 논의할 때 폐지를 하려면 정관의 내용을, 규정을 아예 거기서 뺏어야 이번에 다시 다 신설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남겨둔 상태니까 사실 지금 조직도만 바뀐 거네요.

○ 간사 권중석

정관에 고유사업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이사 이충기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 이사장 강병길

그러니까 '조직 신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조직 변경'이라고만 쓰면 될 것 같아요.

○ 간사 권중석

예, 알겠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조직 변경과 함께 개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사들 “예.”]

고맙습니다.

【 의안번호 제166호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간사께서 두 번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권중석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66호입니다.

(p)11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재단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정원운영 방법을 규정화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6조 정원 규정에 직원의 정년 기준일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정관 개정 변경과 동일하게 건축비엔날레사무국 구성 협조 요청 공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서울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조직 편성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 제9호에 서울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은 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 라고 사무국의 주요업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또한 제8조 2의 7호에 '사무국은 국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가급 이에 상당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 공무원으로 보한다. 또는 계약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에 보할 수 있다.'로 보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직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사 이충기

똑같은 얘기가 지금 불거지는 거예요.

규정이 폐지도 안 된 상태로 다시 신설한다고, 조직 편성에 규정이 원래 남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국 규정어.

○ 간사 권중석

정원 문구상에 도시건축비엔날레가 고유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 이사 이충기

조직은 규정상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 간사 권중석

원래 문구상에 조직은 고유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아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직제 개편하면서 왼쪽에 이 부분도 어쨌든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니까 조직도는 헛갈리니까, 지난번에 조직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남겨놓은 상태인데 또 신설을 하면 안 맞잖아요.

○ 간사 권중석

업무는 남아있었는데 조직 자체에서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 이사 한문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직제상에 직제가 있어요. 그 직제가 조직인데, 직제가 있고 직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원을 줘야 돼요.

정원을 T/O를 준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급은 몇 명, 뭐는 몇 명'

○ 이사 이충기

보직인 거죠.

○ 이사 한문철

보직은 세 번째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 T/O를 줘요. 정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발령을 안 받으면 꺾테기 조직만 있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정원에 사람을 채워줘야 돼요.

1급 보직에 예를 들어서 단장이 1급이다 그러면 '1급 단장자리에 누구를 충원한다.' 이

것은 인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보면 직제와 조직관리는 기초실이 하고, 인사관리는 예를 들어서 인사과가 하거든요. 서울시 공무원 기준입니다.

그것처럼 거기서 여기의 경우에 아마도 도시공간개선기획단에서 요청하셨던 내용은 여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아마 실제로 여기서는 '조직 신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보면 조직 신설이 아니라 직제는 있고 거기에 T/O와 충원을 인사발령을 해 달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만약에 또 하나 줄여서 직제상에 조직이 있었다면, T/O도 있었다면 인사발령 해 달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3가지가 성격이 다르거든요.

○ 이사 이충기

그러면 제안이유에 두 번째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 신설'이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원래 직제가 있는 거잖아요.

○ 간사 권중석

아니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업무상으로 건축비엔날레 업무가 재단의 업무로 돼 있고요. 그 업무로 돼 있다고 해서 꼭 직제가 신설되어 있거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는 현재 팀이나 본부에서 그 업무를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건축비엔날레를 하면서 정식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만들어달라고, 직제를 넣어달라고 한 것이죠.

설사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다른 본부 이하나 다른 팀에서 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를 하겠다 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식 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고유사업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부나 팀을 설치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면 지난번에 비엔날레를 하고 그 규정이 원래 그것 할 때 조직 제6조, 8조 다 있었

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규정이.

○ 간사 권중석

지난번 조직 개편하면서 정관상에 고유사업만 남아있고요. 문구가 남아 있고, 사무국에 관련된 모든 문구는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러면 12쪽에 보면, 12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가장 중요한데, 현행 조직에 보면 아무튼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이 없어요. 8조에 보면.

○ 이사 이충기

그러니까 왼쪽에 현행이라는 게 언제 없어졌어요?

○ 대표이사 최경란

지난번에 없었는데 그런 문구를 못 넣은 거죠.

○ 이사 정승연

지난번 이사회 때 여기에서 한번 없애고요, 지금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니까 폐지를 한 거죠. 폐지한 것 맞네요.
그러는데 지난번에 폐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문구만 이렇게 바꿨네요.

○ 이사 한문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제 폐지된 거예요.
여기 12쪽 보면 폐지가 된 게 맞아요.

○ 이사 이충기

다시 살린 거네요.

○ 이사 한문철

폐지가 되니까 앞에 것도 '변경'이 아니라 '신설'이 맞는 거죠. 폐지된 거예요.

○ 이사장 강병길

그럼 우리가 이 사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직제 및 정원규정이 세부안건으로 보면 2가지거든요.

첫 번째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은 의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한 사무국 직제 신설에 관한 것을 논의하도록 하죠.

첫 번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임금피크제 당사자 직원의 T/O를 실제 신규로 우리가 확보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 간사 권중석

임금피크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일단 별도 보충을 해서 그만큼 현원을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사 한문철

이것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나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얘기죠?

○ 간사 권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사 한문철

그렇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하는 이사들 있음]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와 관련한 직제 및 정원조정 규정은 동의해 주신 것으로 하고요.

[“예.” 하는 이사들 있음]

그 다음에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간사께서 서울디자인재단과 도시공간개선단과 굉장히 긴밀하게 그동안 논의를 해서 조정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장님도 오셨고 총감독님도 오셔서 그 이전과 이후에 첫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직 편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도시공간개선단과 충분히 논의를 하신 내용인 거죠?

○ 간사 권중석

예.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이것을 단장님께 먼저 의견을 들어야하는 겁니까?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저희 비엔날레 협조 관련해서 백서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2017년도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고, 백서에 있는 내용대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총 관람객 46만에 50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한 성과를 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크게 저희는 주제전, 도시전, 그 다음에 현장 프로젝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1차년도에 디자인재단이 사무국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를 했고 내년에 2차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비엔날레는 비슷하게 9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 감독님도 오셨지만 주제는 '집합도시'라는 개념으로 하고, 장소는 마찬가지로 동쪽에 DDP, 저희가 1차년도에 했던 장소와 서쪽에 저희 박물관하고, 돈희문 박물관마을,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막 끝나 있는 시청 앞에 옛 국세청 별관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곧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임재용 감독님과 사닌 교수가 공동감독으로 선임되었고, 저희가 지난 5월에 베니스에 가서 많은 홍보행사를 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건축전시관에서, 비엔날레가 시정 연계다 보니까 '슈퍼그라운드' 이름으로 '시의 주요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크게 개최했었고요.

현재 저희는 이번에 비엔날레재단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재단 설립 관련해서 행안부 1차 협의를 했고, 8월에 출연기관 운영 심의도 통과했고, 이제 12월에 행안부 심의를 상정하면 아마 빠르면 내년 중순, 하반기에는 비엔날레재단이 별도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가 비엔날레를 안정적으로 해 줄 조직이 필요한데, 1차년도처럼 재단에 협조요청을 하러 제가 설명 드리러 왔고요.

사실 저희가 '17년에 시장님께서도 그때 비엔날레재단이, 12월 20일 날 시장님께서 '비엔날레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사무국을 활용해서 비엔날레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얼마 전 8월에도 '디자인재단의 협조를 구해서 빨리 사무국을 구성해서 차질 없게 2차 비엔날레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전에 대표이사님과 재단 이사님 한 4~5차례 면담을 해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요.

이제 사무국이 곧 구성되면, 인원은 아마 10인~11인 정도 기존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2차 비엔날레도 성공적으로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장 강병길

이것이 지금 직제하고 정원규정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정보도 주셨고, 또 계획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재단의 운영과 지원 관리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간략하게,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들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들, 안건들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 같아요.

도공단, 도시건축비엔날레 감독님과 저희 재단, 그리고 새로 채용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정규직을 요청했으나, 과정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채용을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계약직 내용에 보면 첫 번째, 행정이나 법규 준수 관계의 인력이 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어차피 저희 재단 소속이고 저희가 모든 인력관리라든지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직접 도공단과 재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 도시건축비엔날레지만 지금 사무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독님과 사무국은 저희의 카운터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오히려 시의 공단이라고 보는데, 협력관계가 어떤 것을 할지, 이것은 초기에 심 선생님 이하 여러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번에는 재단에 사무국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형식만, 소위 말하는 스물(through) 개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문(명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협력하고 무엇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명분)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번 주제에 맞춰서. 지금 주제가 '집합도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서.

두 번째는 역할 구분, 그것을 하는데 역할 구분을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틀은 한번 정해서 이 부분을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정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서로의 규약이라든지 지킬 내용으로, 한시적인 협력관계이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역할에 따른 책임 소관, 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 시에, 물론 행정적으로는 대표가 요청이 되면 나가서 대표적으로 어떤 카운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만, 상세한 것은 주무 행정부서인 시의 도공단에서 답변을 하는 감사에 대한 의회 대변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이 서로가 공유돼야 되지 않나.

간단하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될 것 같고, 모두가 우려하고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다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대표이사님 내용 제가 충분히 알고요.

1차년도에 저희가 충분히 협조관계라는 게 업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별

어진 게 일부 있었는데, 우려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협조관계 잘 되면 의회 대응이라든지 예산 보고, 집행 현황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채용 전까지는 이 부분을 문서화해서 서로의 협력, 이게 무슨 내규 규정은 아니지만 서로 협력해서 agreement, 신사협정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방침 수립해서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과 법률 준수에서 계약관계 모든 그런 것들은 행정직원에서 보충되지 않으면, 대부분 전문가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은 사실 외주 용역사에서 다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기에도 제가 정규직을 요청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responsibility가 아무리 우리가 역할 구분을 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인가,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인적 구성이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이 5가지는 속기사께서 꼭 기록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된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채용 전까지는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강병길

대표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재단 안에서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지원·관리, 협조해 주는 부서가 어디 있나요?

○ 대표이사 최경란

없죠.

○ 이사장 강병길

직제로 보면 그냥 대표이사 직속으로 돼 있어서, 대표이사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대표이사 최경란

행정적인 거니까 지원본부죠. 예산, 인력관리 이런 것.

○ 이사 한문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시공간개선단하고 비엔날레사무국
하고의 업무관계는 지금 어떤, 협력관계로 돼 있습니까?

○ 이사 이충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비엔날레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을 못하
니까 디자인재단에 의뢰해서 디자인재단에 사무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 집행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예요.

○ 이사 한문철

그러면 비엔날레에 대한 업무는 도시공간개선단이 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 직제
잖아요. 그렇죠?

○ 대표이사 최경란

예.

○ 이사 한문철

그러면 서울시 직제에서 집행을 하시는데 사무국에서 회계처리를 한다?

○ 이사 이충기

그렇죠.

이쪽 디자인재단에 있는, 디자인재단을 통해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선은
정해진 것이죠. 그렇죠?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출연금 형식으로.

○ 이사 이충기

예, 출연 형식으로.

예산을 디자인재단에서 마련해서 이쪽 사무국에서.

○ 이사 한문철

그런데 단지 그것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사 정승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예산 보니까 한 3억 정도 밖에 없던데, 3억에 2억 몇 천 정도가 계약직 뽑으라는 인건비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이사 이충기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잠깐만. 3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사무국 구성 예산이고요. 그게 올 초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국 구성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원래 본예산은 저희가 전체 50억 정도 되는, 아마 40몇 억이 디자인재단을 통해서..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출연금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예, 출연금을.

○ 이사 정승연

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명의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 저희의 입장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9월부터 12월 비엔날레를 하시고, 어차피 비엔날레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계신데 저희가 비정규직 10명이라는 이 인원을 안고, 그리고 여기 경영평가상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를 납득을, 이사님들께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이사 이충기

그 부분은 납득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지난 번 1회 때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온 것이잖아요. 하는 것으로, 시장님 지시로.

○ 이사 정승연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가 한 번의 이벤트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분들은 다 퇴사시키는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사 한문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의 집행 문제라는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직접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인데 왜 디자인재단을 통해서만 예산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 이사 이충기

재단 출연금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요.

○ 이사 한문철

그것은 예산을 변경하면 되죠.

○ 감사 김선수

아마 기부금 때문에, 기부금 처리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예산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말한 기여금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조직 안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재단과 1회 때부터 디자인재단과 비엔날레를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같이 만들면 제일 좋았는데, 디자인재단 고유의 업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은 저희 독자적으로 건축관련 비엔날레재단을 설립하기로 방침이 결정돼서 그 중간과정이 일부 이렇게 도와주시면 다음에는 전체가 새롭게 비엔날레재단으로 독립하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지금 만드시려는 게 큰 명칭이 비엔날레재단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축비엔날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마 모든 비엔날레를 다 아울러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출범을 하게 되면 저는 디자인재단도 거기에 또 한 몫을 하실 수 있는.

지금 약간 큰 그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입막음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사실 들어보면 큰 그림이 있어요.

어차피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도시건축비엔날레, 또 한 번은 다른 패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비엔날레를 어떤 어떤 비엔날레를, 모든 비엔날레를 다 한다는 것인가요?

○ 이사 한문철

그것은 지금 논의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여러 이해관계도 있어서 그것은 결국 서울시 직제나 서울시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복잡한 부분이고요.

지금 단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기부금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제가 보니까 디자인재단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 느낌이에요, 이 형태가.

형태가 어쩔 수 없이 받는, 현재 누군가 받아야 된다면 그게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역대 히스토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재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하자 해서 제가 볼 때는 시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조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선수 감사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감사 김선수

사실 우리 최경란 대표께서 오시기 전부터, 아마 작년부터, 작년도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문화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 하실 때도 내부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들은 바로는, 건축비엔날레를 위해서 특별히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자부 승인사항인 것이고, 행자부에서 서울시에서 새로 재단을 만드는 것이 시간의 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선뜻 해 주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과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한시적으로 저희 디자인재단에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사 한문철

그런데 저는 결정한 부분이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SICAF라는 게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SICAF 행사를, 그것도 옛날에는 문화산업과, 지금은 아마 경제본부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쪽에서 후원을 하는데, 거기는 사단법인 형태예요.

사단법인 형태여서 시 문화산업과가 사단법인에 예산을 후원하면 그 조직이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감독님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그렇죠. 저도 한시적입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러시다면, 만약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단법인에 3억 원을, 우리 디자인재단 안 주고 3억 원을 사단법인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지원하면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무국 조직 같은 멤버를 사단법인에서 하면 훨씬 인원 선발에 있어서의 자율성도 높고 원하시는 분들 해서, 그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다

결국 그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결국 재단이라는 게 재단법인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은 굉장히 만들기 쉽고, 저도 사단법인 인허가를 문화디자인본부장 시절에 한 150개 정도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면 합니다. 신청 받고 나서부터 승인할 때 한 2주 정도면 해 주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 열심히만 준비하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서류가 준비돼요. 자본금도 별로 필요도 없고.

자본금 제한이 옛날에는 5천만 원 있었는데 요즘은 5천만 원 제한도 없어서 한 2~3천만 원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시작했으면 사실 단장님 입장에서도 일하시기는 훨씬 편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나중에 일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님이 지셔야 되거든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무국에서 어떤 형태든 대표님한테 최소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전부 사무국장 전결로 한다 하더라도 그 회계 집행에 대해서 지원본부에서 감사기능 이런 데서 스크린을 할 의무가 있고, 그 부분을 직제상에 밑에 있는데 대표님이 '사실상 공간개선단장이 하나까 나는 모른다.' 할 수도 없다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돼서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된다 말이지요.

○ 대표이사 최경란

작년에 그런 현상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 이사 한문철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 자꾸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간섭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간개선단장님 입장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 이사 이충기

지금 얘기하신 게 다 일어났었어요.

○ 이사 한문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 단장님 입장에서 일하시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의사결정 됐다고 하니깐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드네요.

○ 감사 김선수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오셨으니까 여쭙보고 싶은데, 우리 기부금 처리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도 법상 지정기탁이라는 게 있어서 건축비엔날레에 쓰도록 아예 지정기탁을 하면 직접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지, 혹시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사 이충기

지정기탁으로 하면 바로 부서에서 용역을 취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 감사 김선수

지정기탁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시나 정부에서 받을 때도, 굳이 기부금 때문이라고 하면, 아예 건축비엔날레도 지정기탁에서 들어오는 돈이 건축비엔날레에 쓰이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체계적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 이사 한문철

행정과에서 심사만 받으면 되죠.

심사절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 행정과 심사절차라는 게 시의 행사에 기부금 받는 것인데, 그 자체에 이사님들이 거부할 리도 없고, 그런데 이 논의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 이사장 강병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라는 조직이, 또 그 사업이 지금 어쨌든 저희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규정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규정 개정을 하고 원칙을 바꿔서 하지 않는 한 계속사업으로 비엔날레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당장 내년이면 시행을 하는데, 지금 주신 좋은 의견들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도공단에도 조직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 디자인정책과도 이 문제로, 또 우리 재단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으니까 추후에 정말 좋은 의견들을 내시고, 오늘은 '이 도시건축비엔날레 자체가 디자인재단하고 무관하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떠맡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도시공간개선단과 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련돼 있는 분들, 승효상 선생님이나 여러분과 우리 본부장들 몇 분, 대표님 같이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 이 비엔날레재단을 만들어서 한 해는 도시건축비엔날레 하고, 한 해는 디자인비엔날레 하고, 그 디자인비엔날레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협조관계인 거죠.

도시건축비엔날레도 그동안 너무 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에, 도공단에 맡겨서 총괄 건축가에게 위임했었던 사안들을 우리가 잘 협조해서 디자인 오리엔티드된 시민을 위한 그런 살아있는 비엔날레가 되면 더욱 좋은 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 직제 관련돼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정승연 이사가 아까 의견 준 것,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계약직 10명에서 11명을 우리 재단의 T/O로 확보했다가 비엔날레 끝나면 우리가 그분들을 다 해고해야 하는 이런 인사의 부담을 갖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나중에 비엔날레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인력이 그쪽으로 가면 좋겠죠.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이 인력에 관련된 것은 진짜 우리 재단의 큰 부담이니까 그것은 밀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구요.

우리 재단 안에서도 그저 나중에 대표이사가 감사나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게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가, 또 우리 권 본부장 잘 아시니까, 모든 행정적인 절차도 잘 아시고 내용도 잘 아시니까 적극 협조해서 서로 상의해서 이 비엔날레 이전에 지원·관리, 협조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주체적으로 담당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또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협조는 가능한 것이죠?

○ 간사 권중석

예.

지금 직제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 생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직제표를 기존 사업본부 밑에 두지 않고 대표님 직속으로 두는 이유가, 지난번에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본부 산하에 두고 들어가서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제도 본부 밑에 두지 않고 대표 직속으로 해 놓은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옆에서 어쨌든 좋건 싫건 저희 디자인재단에 넘어와서 당연히 행정적으로나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당연히 협력관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책임관계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표님 직속으로 사무국을 신설했습니다.

지난번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본부 밑에가 아니라 대표님 직속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그럼 나중에 사업예산, 시의회에서 또는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도공단과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설명도 해 주시고 소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1차 때와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위원회가 다를 것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하고 디자인재단하고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중에 가면, 자칫 잘못하면, 잘되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두 분이 두 위원회를 다 가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세요.

실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사장님 정리하신 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되, 제가 오늘 제안 드린 내용을 또 한번 빠르게 검토해서서 직제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2~3개월 내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단장님 일하시는 데, 총감독님 일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으로 드리는데, 제 제안방법을 아마도, maybe 거의 생각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오래 행정을 했고, 제가 워낙 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불쑥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사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총감독님께서 비엔날레 조직이 모든 비엔날레를 다 맡은 생각을 얼핏 비치셨는데요.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제 생각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 이사 한문철

예, 글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술비엔날레다, 무슨 건축비엔날레다, 디자인비엔날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전공이 다 달라요.

그러시기 때문에 총감독님도 달라지고 조직의 헤드가 달라지거든요.

헤드가 다른데, 이 조직을 놔두고 그러면 그때마다 헤드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마 속칭 업계간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재단이 맡고, 건축비엔날레는 건축재단이 맡고, 예를 들어서 미술비엔날레는 시립미술관이나 이쪽에서 맡고 이렇게 가야 아예 책임도 있고 일이 잘

진행되지, 하나의 조직을 두고 거기서 막 하면, 비엔날레 잘 아시잖아요.

○ 대표이사 최경란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 이사 한문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 이사 이충기

아까 이사장님도 그런 의견처럼 하셨는데요.

○ 이사장 강병길

광주시는 광주시가 그 비엔날레를 미술비엔날레도 하고 디자인비엔날레도 합니다.
그 사무국이 같거든요.

○ 대표이사 최경란

그런데 나중에 분리했죠, 결국은.

○ 이사장 강병길

지금은 분리했어요?

○ 대표이사 최경란

분리된 지 오래됐죠.

결국은 너무 안 맞아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거죠.

○ 이사 한문철

그게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 이사 방은진

저는 최초 발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 대표이사 최경란

건축비엔날레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한다는 것은..

○ 이사 방은진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 이사 이충기

이쪽에 재단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이렇게 해서 개정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지하는 절차도 오늘 제안사유나 이런 것을 안건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그것만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놔서 결국은 다 해 봤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나 가지고 재단이 새로 생겼을 때 이관 자체가 전혀 노하우도 이관 안 되고, 두 번이나 해 놓고도.

○ 대표이사 최경란

인력 문제인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고.

○ 이사 이충기

그렇죠.

○ 이사 방은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어떤 주목적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재단에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 이사 한문철

디자인재단은 아니죠. 디자인재단은 원치 않았겠죠.

○ 이사 이충기

처음 생각은 아마 디자인재단이 있으니까 새로 할 것 없이 재단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된 것이겠죠.

○ 이사장 강병길

올며 겨자 먹기로 한 것은 아니고, 잘하려고 했었는데 약간의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허용의 폭에 한계가 있는데 너무 브로드하게 감당하지 못할 미래의 걱정은 나중에 도공단과 디자인정책과가, 문화본부가 같이 있

으니까 서울시 안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내보시죠.
그래서 잘되도록 해야죠. 다 서울시를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일인데요.

○ 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언제 출범하나요?

○ 대표이사 최경란
행정적인 조직은 오늘 지나가면 시장님 승인 나면 바로 조직은 되고, 사람을 뽑는 과정은 우리 지원본부장님께서 일정을 설명 드리시죠.

○ 간사 권중석
일단 조직이 신설되면 3억 원은 들어와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현재 45억, 50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 합쳐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12월 14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에 다시 2019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 왔다가 바로 1월 1일, 1월 2일 이후에 공고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서 인력을 먼저 뽑을 계획입니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1월 1일에 공고를 하시면 한 달 걸리나요?
끝날 때쯤 되겠는데요.

○ 간사 권중석
지금 아시겠지만 채용비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사람 뽑는 것에 대한 운신의 폭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보다 인력을 다, 이의신청 절차라든가 강화해 놔기 때문에.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빠르면 2월? 3월?

○ 간사 권중석

아니요. 3월까지는 안 갈 계획에 있습니다.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 이사 이충기

결정이 돼도 지금 연초에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거죠.

○ 간사 권중석

이 논의가 올 상반기부터 있었고, 그때 정리가 돼서 올해 인원이 한 7, 8월경 뽑아졌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재단 내부사정도 그렇고 기타 협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 이사 한문철

간사님, 오늘 직제가 되고 정원이 이제 확보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간사 권중석

이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원하고 상관없는 인력입니다.

○ 이사 한문철

그렇다면 직제 확정되면 예산 확정되기 전에 바로 채용공고를 내시면 어때요?

○ 간사 권중석

그런데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 대표이사 최경란

올해 예산 3억이라도요.

○ 이사 한문철

올해 예산 있잖아요.

○ 간사 권중석

올해 예산 3억 가지고, 우리가 정규직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뽑아놓고 내

년 예산 부분이 어쨌든, 당연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될지, 인력 부분 어떤 부분이 될지 확정이 안 돼서요.

○ 이사 한문철

그것은 아니죠.

이론적으로 예산은 단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단년예산인데 우리가 계약직 채용할 때 2+3로 하든 3+2로 하든 한단 말이죠.

그럼 공고 내는데 그런 이유라면 예산을 계속적으로 5년을 확보하지 않으면 선발 못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고, 오늘 개정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채용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 없습니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저는 지금 이미 늦었고요. 사무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이 지금 저희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바쁠 때이고, 도시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0개가 넘는 도시를 컨택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내년 2월쯤 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 이사 이충기

이게 아까 이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 그런 식으로 규정 따지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 이사 한문철

규정은 따져야 되는데, 규정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의결되고 오늘 의결된 내용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시 승인이죠. 시장님 결재인지 본부장 결재인지 그것은 위임전결규정 가는 것이니까 서울시 승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채용공고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이사 이충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간사 권중석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인력을 뽑아놓고, 예를 들면 10명을 뽑았습니다. 뽑은 인력이 3억 내에 10명을 뽑은 인력이라고 했을 때, 뽑았는데 그 인력 10명을 내년에 유지해야 되잖아요. 내년 인건비가 확보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이사 한문철

그것 상관 없다니까요.

올해 예산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 인건비가 있어요, 없어요?

○ 간사 권중석

3억이, 저희가 출연금을 받으면 확보하게 되는 거죠.

○ 이사 한문철

그 3억이 10명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1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2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3억이 인건비로 편성돼서 그 인건비가 몇 명이냐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명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10명이라면 말씀처럼 3명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억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몇 명분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의 개념인 것이죠.

○ 이사장 강병길

5명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요청한 변경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뒤에 (p)25에 인건비 운영에서는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해서 5명입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러면 최소 5명은 올해 채용공고 낼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그러니까요.

이 논리로 하면 연초도 못 뽑았던 거예요.

연초라도 못 뽑고 지금도 못 뽑고요.

○ 이사 한문철

(p)25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5명은 채용공고를 낼 수 있어요.

5명 채용공고 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승인돼야 채용공고 낼 수 있는 겁니다.

○ 이사장 강병길

그런데 이것을 22쪽 보시면, 도공단에서 보내온 자료에 '2018년 출연금 3억의 실 집행은 사무국 운영이 시작된 2019년도로 이월되어 사용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대표이사 최경란

이번에 못 뽑는다고 그래서 그랬나요?

○ 이사 정승연

그러면 못 뽑는다는 말이네요.

○ 대표이사 최경란

못 뽑는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 이사장 강병길

그런데 이 항목이, 여기에 문구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행정상 법적으로 이게 맞다는 것이죠?

○ 이사 한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했다가 집행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의결했든 관계없이 예산에 이월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가는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의결했다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해서 예산의 이월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회는 규정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 의결하실 때 이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수정해서 의결하시면 됩

니다.

○ 이사 이충기

삭제해야죠.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 이사 한문철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마도 올해 못 뽑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 간사 권중석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1차적으로 공문이 왔고요. '몇 급을 몇 명을 뽑아달라.'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도공단에서 온 그 인력 그대로 뽑으면 계약직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채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세분화되게 왔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5급, 건축 6급, 예를 들면 계약직 이렇게 굳이 5급, 6급을 구분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 들만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도공단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력 부분이 정리가 덜 됐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그런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닌데요.

○ 이사 한문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보고하라는 얘기는 최종에 한 번이면 되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두 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30년 행정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본부장도 2년 7개월 했었고, 서울시에서 1급으로 2년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제가 기초실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공문은 딱 한 번으로 해야지, 공문이 오고가기 시작하면 공무원은 그 공문에 계속 얽매어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회의해 가지고 어떻게 논의하고 조율해 가지고 조율한 다음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을 딱 주고받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빨라 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5급이든 6급이든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물론 어디까지나 디자인재단이 형식적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실지로 집행할 부분은 공간개선단이기 때문에 개선단에서 실무적으로, 최대한 여기는 열린 자세로 협조해 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되고, 간사님, 확인해 보세요. 내 얘기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 부분, 내가 명색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7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서울시 예산 계장, 과장, 국장을 다 한 사람인데,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 없고, 이게 만약 문제 있다면 지금까지 서울시 역사상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이 영향이 돼서 저희 재단이 올해 직원을 못 뽑는 거예요. 예산이 최종 저기가 안 돼서요.

○ 이사 한문철

전혀 관계없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이사 이충기

제 생각에는 침언을 하면, 어차피 이사장님이나 대표님도 다 협조하는 것으로 서로 의향 정하셨고, 또 오늘 문건도 통과를 하면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가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 마나예요.

○ 이사 한문철

그것은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 한 것이고, 논리적으로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예요.

뽑아놨다 그러면 한 달 썼다가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그것은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서울시 공무원 예산도 매년 단년예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뽑을 때, 정원 뽑을 때 60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예산은 1년 단위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제도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의회에, 예산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법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의회가 예산이 법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상당수 인원은 인건비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사람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다시 통과될 경우에만 다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경우에도 규정상, 이게 준예산 제도도 있고 가예산 제도도 있고 그것이 다 역사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산은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것 통과되면 바로 여기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뽑을 수 있습니다.

○ 간사 권중석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인력에 이 인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100명이 있고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존 인력 100명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플러스알파되는 10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하기로 된 인원을 그 편성된 상태만 에서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상황, 그런 만약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계약직 부분이 우리가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게 기존 인력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기존 인력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뽑아도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 인력을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미리 뽑지는 않지 않습니다.

기존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이 계약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된 불확정된 예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겁니다.

○ 이사 한문철

3억을 가지고 올해 인건비를 편성할 거라면서요.

○ 간사 권중석

그래서 예산가에서 우리 정규직 예산이 이번에 일단 22명이 올라가 있는데, 22명 예산 편성하면서도 지금 정규직 인원을 얼마큼 해 줄 것인가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올해 뽑고자 했던 12명인가 그 부분을 기존 인력, 예를 들면 분모, 당연히 예산을 저희는 기존 인력에 넣지 않고 플러스알파되는 인력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못 뽑고 있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지금 이것은 더 심각한 거죠.

우리 재단이 2년째 못 뽑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못 뽑는 해석을 하셨다고요.

심각하잖아요.

○ 간사 권중석

의회에서 옛날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왜 미리 뽑았냐'라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이사 한문철

우리가 2018년도 예산에 3억이 출연금으로 있는 것이죠?

○ 간사 권중석

예.

○ 이사 한문철

그 출연금이라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출연금인 것이죠?

○ 이사장 강병길

예.

○ 이사 한문철

그래서 서울시 출연 예산 3억이 재단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출연을 했나요, 안 했나요?
출연 안 했어요?

○ 감사 김선수

조직 개편이 돼야 아마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최경란

사무국이 되면 사무국을 통해서.

○ 이사 이충기

그렇죠.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직 출연된 상태가 아닙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러면 직제 개편되면 바로 출연하실 거죠?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예.

○ 이사 한문철

그러면 바로 출연하시면 그 예산은 이미 올해 '18년도에 디자인재단에 인건비가 3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산이.

그러면 그것이 출연금으로 들어오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세입입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3억을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세출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사회 의결이면 되는 거죠?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조정이니깐.

그러면 이사회 의결 거친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서울시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 감사 김선수

이사회 승인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서 승인 받나요?

○ 간사 권중석

시에 가야 됩니다.

○ 이사 한문철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권이 있어요?

○ 감사 김선수

예.

○ 이사 한문철

그러면 okay.

시에서 승인하는 것이지, 그게 의회에서 다시 의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 김선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러면 정확히 표현해서, 이게 되자마자 신속하게 출연금을 주시고, 출연금 주는 날 동시에 여기서는 세출예산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3억 갖고 세출예산 편성하셔서 임시이사회를 열든 서면이사회를 열든 해서 의결하셔서 그것을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당일자로 승인해 주면 하루면 예산이 완전히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인원 선발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공고 나간 이후에 그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는 아마도 채용공고 후에 선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예산이 소위 말해서 이월되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지출원인행위는 했어요. 뭐냐,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채용공고를

냄으로 해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된 돈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의결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돈을 가지고, 3억을 가지고 5명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시면 하루면 채용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 이사 이충기

저희가 일단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풀어나가는 문제는 그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시죠.

○ 이사 한문철

그것에 대해서 간사님이 굉장히, 나도 서울시에서 감사총괄계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22개월을 했어요.

○ 이사장 강병길

이렇게 하시죠.

한 이사님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사안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만 않는다면 우선 이사회에서는 이 안건을 처리하고 후속에 대한 것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도공단과 디자인정책과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신가요?

○ 이사 방은진

이월규정 그것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 이사 한문철

예.

○ 이사장 강병길

그것은 나중에 다음 안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사 이충기

단지 아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냥 저희가 폐지했다가 한두 달만에 다시 또 신설하는
사정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처리를 잘, 기록을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상정사유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부분은 그냥 문구를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사유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문구만 바꾸고
없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시 신설한다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기록으로 제대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시장 강병길

삭제가 된 겁니다. 폐지가 된 거죠.

○ 이사 이충기

보니까 폐지했네요.

○ 간사 권중석

지난번 같은 경우 직제를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하다 보니까 특정한 문구나
직제를 삭제하는 부분에서 일일이 각각의 설명은 아마 드리지 못한 것 아닌가 라고 생
각됩니다.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하면서요.

○ 이사 이충기

예, 그런 것 같아요.

○ 감사 김선수

저는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이사 이충기

비엔날레 사무국 폐지에 대해서요?

- 감사 김선수
예.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과.
- 이사 이충기
하여튼 넘어가시죠.
- 이사 한문철
넘어가시죠.
- 감사 김선수
예.
- 이사 이충기
잘 챙기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안번호 제167호 : 보수규정 개정안 】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죠.

○ 간사 권중석

세 번째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67호 관련입니다.

(p)15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장 직무대행 시 직책수행비 지급기준 통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건입니다.

제4조 부가급여 정리에서 누락된 직책수당 용어를 삽입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당을 함께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4차 이사회에서 단장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단장의 직책수당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이사장 강병길

16쪽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을 하는 역할에 대한 보수규정이 없는데 이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서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직무대행에 대한 인건비를 75만 원으로 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사님들, 의의가 있으신가요?

[이사들 “없습니다.”]

【 의안번호 제168호 : 복무규정 개정안 】

○ 이사장 강병길

없으시면, 그 다음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권중석

복무규정 개정, 의안번호 제168호 관련입니다.

자료 (p)18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단 복무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건입니다.

제13조 4항에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에 대한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하고, 제15조 3항에 18세 미만자에게는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단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진행 과정에서 현장 점검을 받았으며, 이 규정의 구절로 인해 지적사항이 있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육아휴직을 허용치 않는 조건을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서 '6개월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복무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제34조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날을 기존 공휴일에서 재단이 정한 휴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사 한문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사들 있음]

○ 이사 이충기

그중에 15조 3항 있잖아요. '재단은-'이라고 했는데 '재단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든 곳에 '재단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거기만 갑자기 '재단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냥 '18세 미만자들' 이렇게 하면 되죠.

○ 감사 김선수

아마 정의 부분에 '이하 '재단'이라 한다'라는 규정 정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조나 2조쯤에.

'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는 조항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이사 이충기

그러면 모든 곳에 다 재단이라고 들어가야죠.

26조도 '재단은 육아휴직을 시행' 이렇게 다 '재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재단에 대한 복부규정이지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재단에 대한 복부규정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재단은'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 감사 김선수

예, 알고 있는데요. 아마 주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문구라서 넣지 않았나 싶은데, 앞뒤 맥락 없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깐 이것만 그런 것인지, 그런데 딱히 여기만 주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마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사 한문철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지금 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 맥락을 따져서 이것만 '재단은'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면 빼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김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적으로 실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 권중석

예.

【 의안번호 제169호 :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다음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간사 권중석

다음 안건입니다.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69호 관련입니다.

자료 (p)22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설치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공단개선단에 편성되었던 2018년 출연금 3억 원을 재단의 사업계획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중 2억4천을 인건비로, 나머지는 자문위원회 출장비 등 기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이사장 강병길

그 뒤에 24쪽까지 나와있는 사업 예산 변경내역 종합은 전체 내용이 다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골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 3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규정 내용 가운데 상이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항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도시건축비엔날레'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서울비엔날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 간사 권중석

그것은 아마 약식으로 규정된 부분인데, 지난번 이사회 때 이사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전체 규정에 대해서 체계라든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어라든가 체계 부분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3~4월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용어를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단어라든가 안 맞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맞추고 나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12쪽에 보면 그것은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은,’ ‘도시’를 빼고 ‘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만 되어 있어서, 왜 ‘도시’가 빠져있는지, 실제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조례 때는 공식명칭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인데, 그냥 ‘약칭 서울비엔날레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 가운데 ‘건축비엔날레 계획 및’ 이렇게 돼 있어서, 8조 2항.

○ 이사 이충기

(p)26도 위에 보면 거기도 ‘서울건축비엔날레’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을 해야 됩니다.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예, 통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이사장 강병길

이것은 고쳐주시면 이번에 개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를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 이사 이충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맞죠.

○ 이사 한문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5쪽은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법정서류가 아니니까, 행정서류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용어에 있어서는 풀네임을 쓰고 그 다음에 ‘(이하 ‘뭐’라고 한다)’ 하는 그것에 따라서 맞춰야 되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22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표 아래에 '2018년 출연금 3억의 실 집행은' 이것은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는 건가요?

○ 이사 한문철

그것은 제외해야죠.

○ 감사 김선수

안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면 의결에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한문철

삭제해야 됩니다.

○ 이사장 강병길

관찮습니까?

[“예.” 하는 이사들 있음]

○ 이사 한문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25쪽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1년 치 예산이 2018년 예산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일로부터 1년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오늘 이사회 의결됨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이 예산안에 세부항목이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감사 권중석

인력 개편이 덜 끝났습니다. 어떤 직급을 어떻게 뽑을지.

○ 대표이사 최경란

그것은 정하면 되는 것이죠.

○ 이사 한문철

그것은 큰 문제 아닙니다.

○ 이사 이충기

이 내용대로 오늘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 이사 한문철

그렇죠.

○ 이사 이충기

이것을 근거로.

○ 이사 한문철

사무국 운영 3억은 포괄비로 출연금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세출예산을 짤 때 그때 구체적으로 최 대표님께서 정하시는 문제이고요.

○ 대표이사 최경란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 감사 김선수

이미 이게 세입세출에 대한 승인이십니다.

○ 이사 한문철

그러면 이미 됐네요.

세입세출에 대한 승인까지 된 거면, 그러면 이대로 됐기 때문에 내일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해 주면 바로 그 다음부터 공고할 수 있어요.

○ 감사 김선수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권중석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사들 있음]

- 이사 한문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이사 이충기
 본부장님이 엄청 꼼꼼하신 것 같아요.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맨 뒤에 것 보고안건은 의결사안이 아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안건설명에 대해서 이사님들 종합적으로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지적해 주신 수정 사항,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단장님하고 감독님 두 분 오셨는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사 이충기
 안 오셨으면 오늘 통과 안 됐을 거예요.
- 대표이사 최경란
 그럼요.
- 이사장 강병길
 아니면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감사합니다.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많은 관심 감사 드리고요.
- 이사장 강병길
 감사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 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제안한 것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임재용
예.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5호, 166호, 167호, 168호, 그리고 169호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잠깐 의견 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우리 도시건축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이사회나 시의회 그런 데에서 의견을 주셔야 하는 사안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출석해 주셔서, 아마 감독님은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럴 시간은 없으신 것 같고요.

-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때 그때 이사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하여튼 충분히 사전에 하겠습니다.

- 이사장 강병길

고맙습니다.

Ⅲ. 보고안건 보고

○ 이사장 강병길

그럼 마지막으로 보고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권중석

보고안건 3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패션 브랜드 데무 디자인실 감사이셨던 박춘무 이사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9월 14일 사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고 건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진행사항입니다.

제54차 이사회 때 추천해 주신 위원 두 분, 시의회 추천 위원 세 분, 시장 추천 위원 두 분, 총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11월 2일 구성·완료되어 11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비상임이사 모집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임 대상으로는 3월 30일 임기 만료된 고미석 이사님, 박춘무 이사님, 그리고 올해까지만 하시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히신 방은진 이사님까지 해서 총 세 분의 이사님을 새롭게 모시고자 합니다.

후보자 접수되면 12월 4일 2차 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2배수로 서울시장에게 추천되어지고, 1월 중 최종 시장님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분장 내규, 인사규정 시행내규, 비상용직 관리내규 개정 내용입니다.

이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사 이충기

방 이사님은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사임이 안 되는 거예요?

○ 대표이사 최경란

마지막 이사회 참여하시는 건가요?

- 이사 방은진
이제 임시이사회로 끝나나요?
- 이사 한준철
12월에 한 번 더 오실 것 같아요.
- 이사장 강병길
방 이사님께서 사실 지난달에 사임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올 연말까지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 이사 방은진
간곡하게 아니고, 한 마디 딱.
- 대표이사 최경란
이제까지 참석률도 별도 없으셔서 연말까지 좀 참석하셔 달라고.
- 이사장 강병길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 대표이사 최경란
보니까 항상 한 명이 모자라거나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요.
- 이사장 강병길
보고안전에 대해서 이사님들 의견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이사들 있음]

(폐회 : 18시 02분)

IV. 폐 회

○ 이사장 강병길

그러면 이상으로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의결서 및 의사록에 서명날인을 부탁드립니다.

<산회>